

광주지방법원 2021. 5. 28 선고 2019나666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지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기원, 조가연, 이민지, 문영곤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

변 론 종 결 2021. 4. 30.

판 결 선 고 2021. 5. 28.

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. 11. 8. 선고 2018가단51631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D 주식회사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만 한다)와 피고들 사이에 2016. 11. 30.

체결된 31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64,492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64,49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2면 제21행의 “정산 합의를 하고”를 “정산 합의를 하였고,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“<이 사건 증여 행위>”를 “<소외 회사의 송금 행위>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“2017. 3. 7. 미지급 공사대금 중 8,500,000원을 변제받고”를 “위 공사대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2016. 6. 18. 33,000,000원, 2017. 3. 7. 8,500,000원을 각 지급받고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4 내지 12행의 “3)”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3) 또한 소외 회사는 2016. 12. 23. 주식회사 M(이하 ‘M’이라 한다)에 40,000,000원을, 2017. 1. 11. M에 180,000,000원 및 주식회사 N(이하 ‘N’라 한다)에 170,000,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, M과 N은 이 사건 창고 공사의 우선협력업체로서 소외 회사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

돈을 각 지급한 사실, M은 2017. 1. 11. 68,059,217원을 다시 소외 회사에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,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M과 N에 대한 채무는 321,940,783원[= 390,000,000원(= 40,000,000원 + 180,000,000원 + 170,000,000원) - 68,059,217원]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○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의 “이 사건 창고 공사 대금 중”을 “이 사건 창고 공사 계약 당시 공사대금 3,400,000,000원 중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“각 지급)에 도급받아 2016. 7. 15.까지 준공하기로 하였는데,”를 “각 지급받고 2016. 7. 15.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,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“피고는”을 “원고는”으로 고쳐 쓴다.

2. 추가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소외 회사는 2016. 11. 30.경 O에 대하여 20,053,000원 상당의 채무, P에 대하여 68,472,160원 및 28,068,000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, 소극재산 592,525,943원[= 1심에서 인정된 소극재산 475,932,783원 + 추가되는 소극재산 116,593,160원(= 20,053,000원 + 68,472,160원 + 28,068,000원)]이 적극재산 531,191,443원을 초과하여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O의 대표자 Q이 2016. 8. 11.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20,053,000원의 견적서를 발행한 사실, P의 대표자 R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2016. 6. 2. 68,472,160원의 견적서를, 2016. 8. 13. 28,068,000원의 견적서를 각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갑 제14호증,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O가 2016. 7. 1.부터 2016. 12. 31.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는 6,600,000원(= 공급가액 6,000,000원 + 세액 600,000원)인 사실,

R은 2016. 6. 2. 및 2016. 8. 13. 발행된 견적서와 관련된 금액은 건축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2017. 3. 24. E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70,000,000원은 E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기로 정산 합의를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,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O와 사이에 20,053,000원의 채무를, P과 사이에 합계 96,540,160원(= 68,472,160원 + 28,068,000원)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거나 2016. 11. 30.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효진, 판사 이지영, 판사 김윤선